

대법원 2017므12552 국제이혼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이 사건 이혼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 7. 2.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음
-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5. 5. 22.까지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갔고, 2015. 5. 22.부터는 원고가 있는 곳이 아닌 캐나다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음. 2015. 8. 1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음. 피고는 2013. 11. 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하 '갑'이라 함)의 주소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는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에는 체류기간이 2016. 11. 22.까지로 되어 있음
- 원고는 2015. 3. 19.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한 이혼 사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인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였음

■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소송 경과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 명의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함
 - 이혼 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원·피고의 동일한 본국법인 캐나다 이혼법을 적용함
 - ☞ 국제사법의 관련규정(제37조에서 제39조까지)과 캐나다 이혼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별지] 참조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심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나다 이혼법 제8조 제2항 (a)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명할 수 있음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원·피고의 동일한 본국법인 캐나다 퀘벡주 민법이 적용됨
 - 원고와 피고의 재산비율은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 취득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80%, 피고 20%로 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피고 명의의 아파트, 피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들 갑 명의로 구입한 차량 등이 포함됨
-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음
- 원심 법원이 명한 재산분할이 부당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원·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캐나다인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상고기각**: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다. 판단 근거

- ▣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함
 -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함
 -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력,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준거법, 사건 관련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재판상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큼
- 피고가 소장 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실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이 사건 이혼청구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 갑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하며 이송 신청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로 다투어졌던 부분은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피

고가 악의적 유기나 기망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임. 따라서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음

-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물렀고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캐나다 국적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대한민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음.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법원에서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졌음
- 이 사건에서 증거가 필요한 사실은 대부분 출입국사실증명,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서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 반드시 캐나다 현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하여 캐나다 법원에서만 심리해야 한다면 소송경제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 ▣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임
-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분쟁된 사안과 대한민국 간의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2001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처음 신설되었음

- 국제사법 개정 후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전개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등이 있고, 재산법상 사건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법리가 인용되어 왔음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가사사건에 대하여도 개별적 사정의 특수성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위 재산법상 사건의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등은 존재하였지만,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판시한 사례는 없었음
- 이 판결은 가사사건 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사이의 이혼사건 등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별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8조(부부재산제)

-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캐나다 이혼법¹⁾ 제8조 제2항 (a), (b) 및 제3항²⁾

혼인관계의 파탄.

(2) 혼인관계의 파탄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한다.

- (a) 배우자 쌍방이 이혼소송 제기 당시 별거상태에 있고, 이혼소송 판결(결정) 직전 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1) An Act respecting divorce and corollary relief. 약칭으로는 Divorce act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6르22226 판결)에서 가져옴

(b) 이혼소송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이후 (i)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ii) 일방 배우자에게 동거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별거기간의 계산.

(3) 위 (2)항 (a)와 관련하여, (a)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별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별거한 기간은 배우자 쌍방이 별거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